

2021년 3월 10일  
@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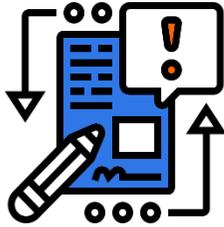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Kingdom of Cambodi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SM**Global  
Accounting & Consulting Co., Ltd.  
에스엠 會計法人



I. 의의

- 1. 명칭
- 2. 협정 체결 경위
- 3. 이중과세 방지 협정과 자국내법 관계
- 4. 체약국
- 5. 협정 체결의 목적



II. 협정의  
주요 내용

- 1. 적용조세
- 2. 용어
- 3. 기타 관련 세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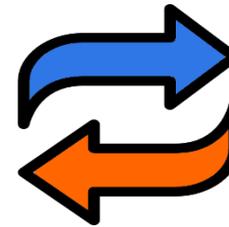
III. 세목별 내용

- 1. 고정사업장소득
- 2. 부동산 소득
- 3. 사업이윤
- 4. 국제운수
- 5. 특수 관계 기업
- 6. 배당
- 7. 이자
- 8. 사용료 및 기술용역  
에 대한 수수료
- 9. 양도소득
- 10. 근로소득
- 11. 이사의 보수
- 12. 예능 및 체육인
- 13. 연금 및 사회보장  
연금
- 14. 정부 용역
- 15. 면세
- 16. 그 밖의 소득



IV. 이중과세의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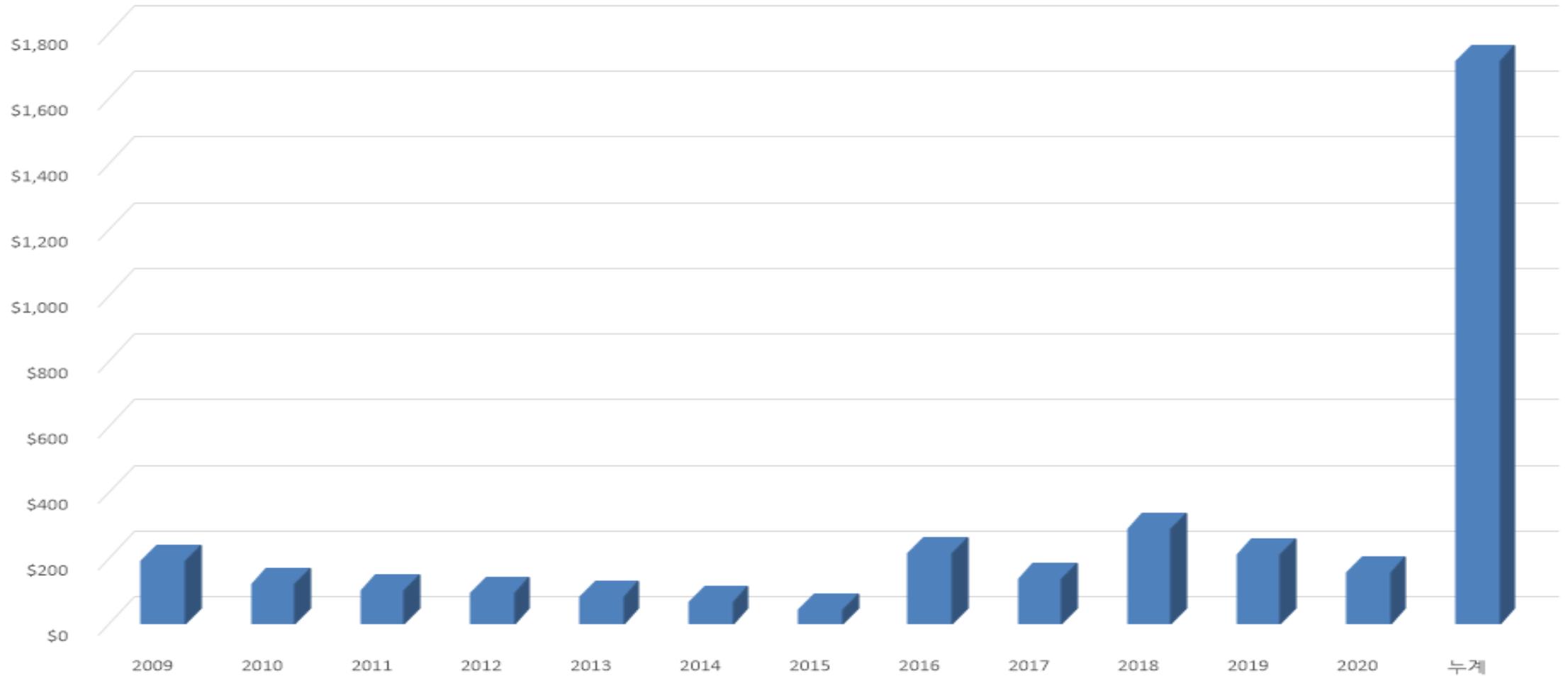
1. 한국의 경우
2. 캄보디아의 경우



V. 정보의 교환

1. 내용
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캄보디아 직접투자 누계 (단위:백만불)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누계      |
|----------------|-------|-------|-------|------|------|------|------|-------|-------|-------|-------|-------|---------|
| ■ 투자금액(단위:백만불) | \$193 | \$122 | \$103 | \$96 | \$82 | \$65 | \$43 | \$215 | \$137 | \$290 | \$212 | \$155 | \$1,713 |

## 1. 협정 명 칭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

## 2. 협정 체결 경위

- 2016년 9월 협의 개시
- 2019년 11월 25일 서명
- 2021년 1월 29일 발효
-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

### 3. 이중과세 방지 협정과 자국내법 관계

- 헌법상 국제법 준수 의무 (국제법 준수주의)
- OECD 모델 조세조약의 구속력
  -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지침
  - 법적 구속력 없음 (해석 시 참조)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 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특별 법적 지위)
- 캄보디아 수정헌법 제8조 제2항
  - The King shall be guarantor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Kingdom of Cambodia the protector of rights and freedom for all citizens and the **guarantor of international treaties.**

## 4. 체약국

- 대한민국 : 96개국 (발효 94, 미발효(수단) 1, 효력정지(나이지리아) 1 / 2021년 2월 기준)
- 일본 : 1970.3.3 / 1970.10.29 (최초의 협정국)
- 아세안 10개국과 모든 조세조약 발효됨
- 기한 : 5년 단위 갱신
- 캄보디아 : 9개국 (2021년 2월 기준)

## 5. 협정 체결의 목적

- 과세권 경합의 조정
- 경제교류의 촉진
-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

### 1. 적용 조세

#### i - 대한민국

- 소득세 (개인소득세)
- 법인세 (법인소득세)

✓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때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收入)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여기에 개인의 인적 사정, 즉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에 장애인의 유무 등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을 달리하게 하는 인적공제제도(人的控除制度 :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 공제제도(항목별 공제 또는 표준공제)를 채택한 종합소득세제도(綜合所得稅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퇴직·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分類課稅)하고 있다.

### 1. 적용 조세

#### i - 대한민국 (계속)

##### ➤ 농어촌특별세 (부가세 Sur-tax : 종세)

✓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 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소득세 (부가세 Sur-tax : 종세)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각 납세의무 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의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인 법인지방소득으로 나뉜다.

### 1. 적용 조세

#### ii - 캄보디아

##### ➤ 원천세 (Withholding Tax)

#### 거주자에게 지급 시

|   |     |
|---|-----|
| 임차료 : 실질 과세 납세자 간의 임대차 계약으로 적정한 tax invoice가 발행되는 경우 및 임대 전문 법인으로 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면제 | 10% |
| 서비스 용역 : (Tax invoice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  | 15% |
| 로열티   | 15% |
| 이자 비용 지급 : (캄보디아 국내 은행에 지급 시 제외)  | 15% |
| 캄보디아 국내 은행에서 정기예금 등 이자 수령 시   | 6%  |
| 캄보디아 국내 은행에서 요구불예금 이자 수령 시  | 4%  |
| 캄보디아 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구입시 면제  |     |
| 기타 소액 (KHR 50,000, U\$12.50 상당) 의 용역 서비스 지급 시 면제                                      |     |

### 1. 적용 조세

#### ii - 캄보디아 (계속)

##### ▶ 원천세 (Withholding Tax) (계속)

- 거주자인 실질 과세 납세자 (Permanent Establishment 포함)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할 경우에는 14%의 원천 징수를 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에게 지급시

|                      |     |
|----------------------|-----|
| 차입금 이자 지급            | 14% |
| 임차료, 로열티 또는 자산 사용료 등 | 14% |
| 경영이나 기술 서비스료 등       | 14% |
| 배당 지급                | 14% |

### 1. 적용 조세

#### ii - 캄보디아 (계속)

##### ▶ 최저한세 (Minimum Tax)

- 모든 실질과세납세자들은 최저한세의 납부 의무자로서 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금액을 포함한 연 매출 (Annual Turnover)<sup>5)</sup> 의 1%를 매년 연말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하도록 규정

##### ▶ 배당지급법인 추가이윤세(QIP 승인기업의 배당에 관한 세금)

- QIP기업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 받으나 배당을 받을 시 20%의 세율 적용, 그러나 본 협정의 적용시 10% 적용

##### ▶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자본 (Capital)의 매각이나 양도에 따른 자본 이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3개월 이내에 자진 납부해야 함 (동산 / 부동산)

5) 보통 연매출액 및 기타 수입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1. 적용 조세

#### ii - 캄보디아 (계속)

##### ➤ 소득세 (Income Tax)

| 항 목                      | 법인세율     | 비 고         |
|--------------------------|----------|-------------|
| 일반 세율                    | 20%      | 기본세율        |
| 원유, 가스, 특정 광물 탐사 활동 관련   | 30%      |             |
| 일반 위험 보험 관련              | 5%       | (보험료 수입 총액) |
| 개인 거주자                   | 0% ~ 20% | 누진세율        |
| 면세 (과세 면제 - Tax holiday) | 0%       | 허가 받은 기간 동안 |

### 1. 적용 조세

#### ii - 캄보디아 (계속)

➤ 임금소득세 (Tax on Salary)

| 월 근로 소득 과표 금액          |               | 해당 세율<br>퍼센트 (%) | 누적 공제 한도  |        |
|------------------------|---------------|------------------|-----------|--------|
| KHR                    | U\$           |                  | KHR       | U\$    |
| 1,300,000 까지           | 325 까지        | 0%               | 0         | 0      |
| 1,300,001 ~ 2,000,000  | 325 ~ 500     | 5%               | 65,000    | 16.25  |
| 2,000,001 ~ 8,500,000  | 500 ~ 2,125   | 10%              | 165,000   | 41.25  |
| 8,500,001 ~ 12,500,000 | 2,125 ~ 3,125 | 15%              | 590,000   | 147.50 |
| 12,500,000 초과          | 3,125 초과      | 20%              | 1,215,000 | 303.75 |

### 2. 용어

#### i - 거주지 (거주자)

- 거주지 관할과 원천지 관할
  - 거주지 관할 → 전세계소득 과세
  - 원천지 관할 → 국내원천소득 과세
- 거주자와 비거주자 (캄보디아 세법 기준/이중과세방지협정상 요건 후술)

| 거주자로 간주되는 법인  | 거주자로 간주되는<br>캄보디아 비 국적자인 자연인  |
|---|---|
| 1) 캄보디아에서 설립한 경우,<br>2)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br>3) 주된 사업장이 캄보디아에 있는 경우 | 1) 캄보디아 주된 주소 및 거소가 있는 경우<br>2) 세무 과세 기간 중 <b>182일 이상</b> 을<br>캄보디아에 거주한 경우 |

### 2. 용어

#### ii – 인(Person)과 회사

- 인 (Person) : 개인, 회사, 모든 인의 단체
- 회사 (Company) :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

#### iii – 항구적 시설 (고정 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 9개월 초과 : 건축현장, 건설·조립·설치 공사
- 6개월 초과 : 천연자원 탐사·개발
- Permanent Establishment 유형 : 지점, 건설공사, 대리인
- "Permanent Establishment가 없으면 과세 없다" 는 원칙
- 실질적 (Substantial), 정규적 (Regular), 계속적 (Continuous), 통상적 (Ordinary) 사업 활동

### 2. 용어

#### iv - 사용료 / 기술 용역에 대한 수수료

- "사용료"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하기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의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뜻함.
-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기업 또는 그 밖의 인력의 기술용역제공을 포함해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뜻함.

### 3. 기타관련 세제 등

#### i. 이전가격세제 (Transfer-pricing)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국조법 제5조 ① 1호)

-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거주자와 국외특구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 당사자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국조법 제5조 ① 2호)

- **원가가산방법(Cost Plus Price Method)**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국조법 제5조① 3호)

### 3. 기타관련 세제 등

#### i. 이전가격세제 (Transfer-pricing) (계속)

##### ▪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국조법 ① 제5조 4호)

##### ▪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국조법 제5조 ① 5호)

### 3. 기타관련 세제 등

#### ii.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 실질주의
- 이자공제부인 입법

#### iii. 조약 쇼핑 (Treaty Shopping)

- 어떤 조세조약에 대하여 조약적격(조약당사자적격)을 갖지 아니하는 제3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에 자기가 지배하는 법인 등의 중간 개재자를 두고 이것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약적격을 취득하여 당해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감면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말함. (Tax haven)
- 경제적소속 원칙 위반

### 3. 기타관련 세제 등

#### iv. 외국납부 세액공제

- 공제요건
  - ✓ 해당세금이 실제로 외국정부에 납부되어야 함
  - ✓ 해당 세금이 당해 납세자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함
  - ✓ 공제 가능한 세금이어야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Foreign Tax Credit Limitation)
  - ✓ 완전세액공제방법 : 외국납부세액 전액 공제 제도
  - ✓ 일반세액공제방법 : 일정한 한도내에서 공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

### 3. 기타관련 세제 등

#### iv. 외국납부 세액공제 (계속)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Indirect Foreign Tax Credit)
  - ✓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 등을 받은 경우, 당해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배당 등에 대응하는 금액(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당해 내국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
  - ✓ 10% 이상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Tax Sparing Credit)
  -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할 수 있는 제도
  - ✓ 이는 개발도상국의 조세감면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것
  - ✓ 10년 일몰

### 3. 기타관련 세제 등

#### iv. 외국납부 세액공제 (계속)

- ▶ 외국법인세액의 손금 산입 방식
  - 세액공제방식
  - 손금산입방식

### 3. 기타관련 세제 등

#### v.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또는 **국외 근무 공무원** 등은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음
- 해외유학생 등 **해외장기체류자**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 하여야 함

| 구 분         | 내 용   | 적용시기      |
|-------------|---|-----------|
| 신고대상 계좌 확대  | ☞ 은행 및 증권 계좌 → <b>모든 금융계좌</b> (은행 및 증권 계좌, 파생 상품, 채권, 펀드, 보험 등) | '14년 신고부터 |
| 실질소유자 범위 확대 | ☞ <b>100% 해외현지법인</b> 명의 계좌에 대해 <b>법인 주주</b> 에게 신고의무 부여          | '16년 신고부터 |
|             | ⇒ <b>개인 주주</b> 까지 신고의무 확대                                       | '20년 신고부터 |
| 신고기준금액 인하   | ☞ 10억 원에서 <b>5억 원</b> 으로 인하                                     | '19년 신고부터 |

## 1. 고정사업장 소득 (제5조)

### ▪ 개요 :

- ✓ 건축현장, 건설·조립·설치 공사 또는 이와 관련되어 감독활동 (9개월 초과)
- ✓ 천연자원 탐사·개발을 위한 활동(주요 장비의 운용 포함) (6개월 초과)

### ▪ 유형 :

- ✓ 관리장소
- ✓ 지점
- ✓ 사무소
- ✓ 공장
- ✓ 타인에게 저장시설을 제공하는 인(Person)과 관련된 창고
- ✓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에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 ✓ 농장 또는 플랜테이션
- ✓ 저장, 전시 등의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재고 보유, 가공 목적의 상품의 재고 보유, 정보수집만을 위한 고정 사업장 유지 등은 제외함

### 1. 고정사업장 (제5조) (계속)

- 과세관계
  - ✓ Permanent Establishment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 → 원천징수로 과세관계 종료
  - ✓ Permanent Establishment 를 갖는 단계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신고 납부
  - ✓ 국내자회사 설립 → 내국법인인 자회사의 전세계 소득 과세
  - ✓ "Permanent Establishment 없으면 과세 없다."

| 대상 소득    | 요건                          | 납세지국 |
|----------|-----------------------------|------|
| 고정사업장 I  | 건축현장, 건설·조립·설치 공사기간이 9개월 초과 | 원천지국 |
| 고정사업장 II | 천연자원, 탐사, 개발이 6개월 초과        | 원천지국 |

## 2. 부동산 소득 : (제6조)

### ➤ 부동산의 분류

-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 부동산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광상(鑛床) 광천(鑛泉)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이거나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
- 단,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 ➤ 과세대상

-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양국 과세)
- 부동산의 직접 사용에 의한 소득
- 부동산 임대 소득
-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대상 소득  | 요건       | 납세지국 |
|--------|----------|------|
| 부동산 소득 | 부동산 소재지국 | 원천지국 |

## 3. 사업이윤 (제7조)

- 사업진출형태
  - PE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
  - PE로 인정되는 단계
    - ✓ 지점 등 (Facilities PE)
    - ✓ 건설공사 등(Construction PE) : 6개월, 9개월
    - ✓ 대리인(Agent PE) : 종속대리인, 재고보유 대리인, 주문취득 대리인
  - PE단계별 과세(외국법인의 진출 형태와 과세 관계)

PE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 → 원천징수로 과세관계 종료

PE를 갖는 단계 →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 과세

국내 자회사 설립 → 자회사의 전세계 소득 과세

## 3. 사업이윤 (제7조) 계속

### ➤ 과세 기준

-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획득한 사업이윤은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획득한 사업이윤은 캄보디아에서 과세할 수 있음
- 캄보디아에서 설립된 법인 등(지사, 자회사)에서 획득된 사업이윤은 캄보디아에서 과세 및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함

### ➤ 판단기준

사업활동이 다음과 같이 영위되어야 함

- 실질적(substantial)
- 정기적(regular)
- 계속적(continuous)
- 통상적(ordinary)

#### 4. 국제운수(제8조)

- 한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국제운수상 항공기의 운항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한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은 **캄보디아**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캄보디아**에서 과세되는 조세는 그것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경감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단체**에 참여해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한다.  
(거주지국 과세)

| 대상 조세    | 제한 세율 | 비고        |
|----------|-------|-----------|
| 국제운수(항공) | 0%    |           |
| 국제운수(선박) | 50%   | 50%는 거지지국 |

#### 5. 특수관계기업(제9조)

가. 한국의 기업이 캄보디아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출자, 임원의 파견, 독점적 거래 조건 등)

나. 동일인이 한국 기업과 캄보디아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한국이 한국의 이윤에 캄보디아에서 과세된 캄보디아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한국 기업에게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캄보디아은 그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이전가격과세)

## 6. 배당 (제10조)

- 대상
  -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
  - 채권이 아닌 이윤 참여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
- 과세
  - 캄보디아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배당을 지급하는 캄보디아 거주자인 기업에게도 캄보디아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제한세율 : 10%

| 대상 조세 | 제한 세율 | 비고        |
|-------|-------|-----------|
| 배당    | 10%   | 양측 체약국 과세 |

### 7. 이자 (제11조)

- ▶ 캄보디아에서 발생해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이자는 캄보디아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양쪽 과세)
- ▶ 제한세율 : 10%
- ▶ 단 정부 등 수취 시 영세율 적용
- ▶ 대상 금융기관 등

| 한국         | 캄보디아            |
|------------|-----------------|
| 한국산업은행     | 중앙은행 또는 지방지점    |
| 한국무역보험공사   | 지방 개발 은행        |
| 한국수출입은행    | 합의된 법정 단체 또는 기관 |
| 합의된 유사한 기관 |                 |

## 7. 이자 (제11조) 계속

### ➤ 이자소득의 범위

- 담보유무 상관없음
-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 국채, 공채,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장려금 포함
- 단, 연체료는 포함하지 않음

### ➤ 국내원천이자소득 기준

-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된 경우는 거주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지국에서 원천징수함
- 특수관계자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과다, 과소 지급 이자에 대해서 각 국의 법에 따름 (손금 불산입)

| 대상 조세        | 제한 세율 | 비고 |
|--------------|-------|----|
| 이자 (민간)      | 10%   |    |
| 이자 (정부 및 공공) | 0%    |    |

#### 8.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제12조)

- 캄보디아에서 발생해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양쪽과세)
-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것이 발생하는 **캄보디아**에서도 **캄보디아**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 상기 규정은 **한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한 **캄보디아**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 이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8.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제12조) 계속

- 지급지 기준
- 대상
  - ✓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및 신안, 도면, 비밀공식,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 ✓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 ✓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Knowhow)
  - ✓ 경영, 기술의 자문 용역

| 대상 조세    | 제한 세율 | 비고 |
|----------|-------|----|
| 사용료 및 용역 | 10%   |    |

### 9. 양도소득 (제13조)

- 원천지국 과세 :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 고정사업장의 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나 이에 관련 있는 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
- 부동산으로부터 전체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치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는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가능

| 대상 소득    | 요건                             | 납세지국 | 비고          |
|----------|--------------------------------|------|-------------|
| 양도소득 I   | 부동산 및 사업용 동산 등                 | 원천지국 | 양도기업 거주지국   |
| 양도소득 II  | 선박, 항공기 및 운항과 관련된 동산 등         | 거주지국 | 양도기업 거주지국   |
| 양도소득 III | 전체가치의 50% 초과 가치를 주식의 양도로 얻는 소득 | 원천지국 | 주로 부동산 보유기업 |

### 10. 근로소득 (제14조)

- 한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해 취득하는 급여,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캄보디아**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캄보디아**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에서 발생한 보수는 **캄보디아**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근로가 있는 곳에서 과세)
- 한국의 거주자가 **캄보디아**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해 취득한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수취인이 그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 기간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거주자 요건)
  - 나. 그 보수가 **캄보디아**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한국)**에 의해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한국)**해 지급되며,
  - 다. 그 보수가 **캄보디아**에 있는 그 **고용주(캄보디아)**의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지 않는 경우
- **한국** 기업에 의해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해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해 취득하는 보수는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 대상 소득   | 요건                               | 납세지국 | 비고     |
|---------|----------------------------------|------|--------|
| 근로소득 I  | 고정사업장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           | 거주지국 |        |
| 근로소득 II | 183일 이상체재 및 수행지국 고정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지국 | 용역수행지국 |

### 11. 이사의 보수 (제15조)

- 한국의 거주자가 캄보디아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캄보디아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대상 소득  | 요건                    | 납세지국 | 비고 |
|--------|-----------------------|------|----|
| 이사의 보수 | 상임 또는 비상임(183일 미만 체류) | 원천지국 |    |

## 12. 예능 및 체육인 (제16조)

- 근로소득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캄보디아**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캄보디아**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캄보디아**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캄보디아**로의 방문이 양 체약국 중 어느 **한국**, 그 지방당국 또는 그 공공기관의 공공기금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지원되거나 양 체약국 정부 간 문화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캄보디아**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대상 소득        | 요건    | 납세지국 | 비고 |
|--------------|-------|------|----|
| 예능인 및 체육인 I  | 본인 수령 | 원천지국 |    |
| 예능인 및 체육인 II | 타인 수령 | 원천지국 |    |

## 13. 연금 및 사회보장연금 (제17조)

- 지급지국 과세
- 정부 용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의 거주자에게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이 **캄보디아**의 거주자 또는 **캄보디아**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에 의해 지급된 경우 그 **캄보디아**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양쪽과세)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또는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제도에 따라 지급된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은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 14. 정부 용역 (제18조)

- 지급지국 과세
- 캄보디아 또는 그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해 **캄보디아**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한국**에서만 과세
- 그러나 그 용역이 **한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한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한국**에서만 과세
  - **한국** 국민, 또는
  -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되지 않은 사람
- **캄보디아**나 그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해 **캄보디아**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기금을 설치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캄보디아**에서만 과세
- 그 개인이 **한국**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한국**에서만 과세

15. 면세 (제19조, 20조)

- 학생
- 교수 및 연구자

| 대상자          | 요건                    | 면세기간 | 비고 |
|--------------|-----------------------|------|----|
| 학생           | 생계유지, 교육, 훈련 목적의 해외송금 | 면세   |    |
| 교수, 교사 및 연구자 | 교수소득                  | 2년   |    |

## 16. 그 밖의 소득 (21조)

- 거주지국 과세
- 이 협정의 앞선 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한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한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캄보디아**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의 규정이 적용된다. (**고정사업장소속지에서 과세**)
- 제1항에 언급된 인과 그 외의 인, 또는 이들 양자 및 제3자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해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간 합의되었을 금액(만약 있다면)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해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대상 소득 | 요건                              | 납세지국 | 비고          |
|-------|---------------------------------|------|-------------|
| 기타소득  | 제21조 이전에 열거된 이외의 항목으로부터 획득되는 소득 | 거주지국 | 소득발생지와 상관없음 |

### 1. 한국의 경우

-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납부할 조세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의 과세 가능한 소득에 대한 한국의 세금에서 공제되는 세액과 관련된 한국의 세법 규정(그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 한국 거주자가 캄보디아에서 소득을 취득하고, 그 소득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캄보디아 법상 캄보디아에서 과세가 가능할 경우, 그 소득과 관련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조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할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그 공제액은 그 공제를 하기 전 해당 소득에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소득이 캄보디아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한 배당이고, 그 한국 거주자인 회사가 그 배당지급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본금의 **최소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해 그 배당지급회사가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조세를 고려해 공제한다.
  - 위 첫문단의 목적상,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조세”에는 캄보디아 법 및 관련 규정이나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특별한 장려책에 의해 면제되거나 감면되지 않았다면, 캄보디아 법 및 이 협정에 따라 캄보디아에 납부하였을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목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 후 10년 간 유효하다. 다만, 이 기간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허용 10년 일몰)**
- 4) 이 조 1)목의 목적상, 캄보디아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조세”에는 이 조 3)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과 관련해 배당지급법인 추가이윤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 2. 캄보디아의 경우

- ▶ 캄보디아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캄보디아는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와 동일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로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공제 전에 산출되어 부과된 캄보디아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1. 내용

-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나 양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한쪽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그 제공받은 정보는 제1항에 언급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에 대한 집행 또는 소추, 그 조세에 관한 불복결정과 관련 있는 인(人)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인(人)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한다. 그러한 인(人)이나 당국은 그 제공받은 정보를 오직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한 인(人)이나 당국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 조치의 수행
  -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 1. 내용 (계속)

-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 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해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명의인, 대리인·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人)이 정보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정보가 어떤 인(人)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그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MCAA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가입한 국가의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임.
  - 2019년 기준 **102**개 국가와 정보교류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예정.

- ▶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캄보디아국세청 (GDT :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의 관련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강의 자료 내용과 시행중인 법령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법의 적용시에는 적용 시점의 세법을 확인하시거나 세무서 또는 회계 법인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본강의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본 강의자 및 SM Global Accounting & Consulting Co., Ltd. 는 본 강의의 내용 전체 및 일부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 ▶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아래의 메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메일 : [ceo@smacct.com](mailto:ceo@smacct.com)

SM Global 이메일 : [info@smacct.com](mailto:info@smacct.com)

연락처 : (+855)12-394-095  
(+855)23-990-853

 SM Global  
Accounting & Consulting Co., Ltd.

에스엠 會計法人 대표이사 이응성모

캄보디아 회계감사협회 회원번호 : No. C-00046

A Member of Kampuch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Auditors (KICPAA)

감사합니다.

- 끝 -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Kingdom of Cambodi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SM** Global  
Accounting & Consulting Co., Ltd.  
에스엠 會計法人